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28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도로운영과	담당 자	• 과장 직무대리 박영은, 사무관 김남일, 주무관 김병진 • ☎ (044) 201-3917, 3914	
보도일시		2017년 11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8.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% 감면 · 1만원 미만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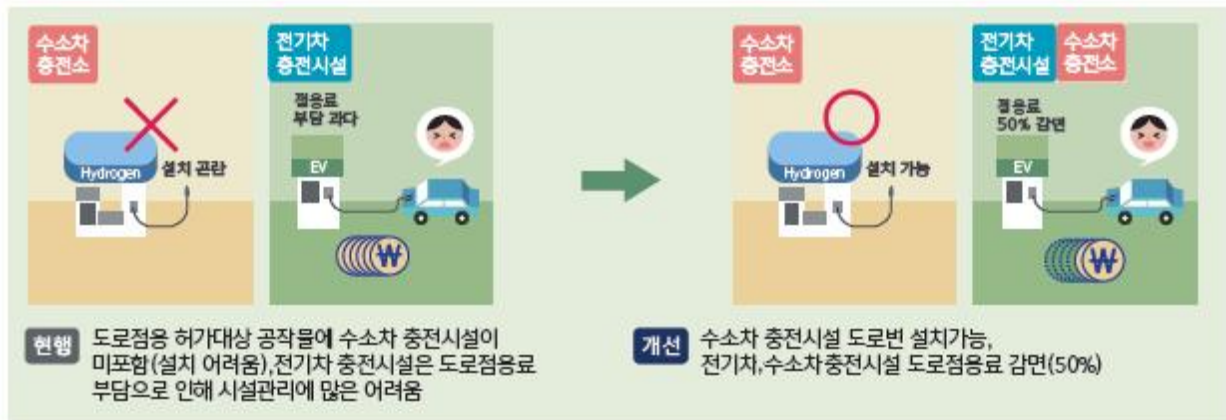
작년 12월 규제개혁 이행과제...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
-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·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%씩 감면하고,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.

<주요 개정내용>

- 수소·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(안 제55조 및 제73조)

수소차·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



○ 소액 도로점용료(1만 원 미만) 징수제외(안 제71조)

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 상향





□ 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(서울 상공회의소, 1차관 주제)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 하는 것이다.

○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·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, 관련 협회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

○ 중소기업 읍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‘규제개혁은 민생이다’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  <p>광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운영과 김남일 사무관(☎ 044-201-39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

- 수소·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(시행령 제55조 및 제73조)
 -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·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 허용과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함
 - 이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, 수소·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%씩 감면
 -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수소·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- 소액 도로점용료(1만 원 미만) 징수제외(시행령 제71조)
 -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조정(5천 원 미만 → 1만 원 미만)하여 소상공인 등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
 -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,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 방지가 기대됨